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403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114호 2019. 7. 8.(월)

【조 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139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140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14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14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 2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14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14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14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14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5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14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9-96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6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9-97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9-986호(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0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9-90호(연수구 도로명주소 고시) 13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9-91호(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13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9-92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1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4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9-93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47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화된 공무국외출장으로 구민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공무국외여행조례’를 ‘공무국외출장조례’로 변경 ○ 공무국외출장 목적 및 적용범위 등(안 제1조~제3조) ○ 심사위원회 설치 및 임기 등(안 제4조~제9조)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안 제10조) ○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등(안 제11조~제13조) ○ 사후관리 강화(안 제14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19. 7.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139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의원의 임기는 의회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이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로 그 심사

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공무국외출장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

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0일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7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가능한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
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등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 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2019년~2022년까지의 여비를 기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 하였으나 종전 기준에 따른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 표가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별표 3 삭제 ○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별표 4 삭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19. 7.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140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은 삭제 한다.

별표 4는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 제안이유 ○ 2019년 10월 준공예정인 구립 사회복지관과 기존 위탁운영 중인 3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안 제3조(적용범위) - 구에서 설립한 사회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 ○ 안 제4조(사업내용) ※ 별표1 -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 안 제5조(사업대상) - 모든 지역주민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이나,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제공대상 ○ 안 제6조(운영의 위탁) -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안 제7조(수탁자선정) -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 선정 ○ 안 제10조(위탁 계약의 해지) -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했을 때 등의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 명	주 요 내 용
	○ 안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를 실시 하여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실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 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갱신 가능 ○ 안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15명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안 제14조(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 별표2 -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하고, 징수한 이용료의 사용처 및 환불사유 발생시 환불 기준 명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19. 7.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141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한다.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대상)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선정)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7조의2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수탁자는 복지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1조(위탁계약기간) 위탁계약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실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계약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평가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 ③ 위탁기간 중 제10조에 의해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7조를 따른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설의 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 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한다.

1. 해당사업의 자체비용 충당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하여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운영의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복지관의 사업(제4조 관련)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 보호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 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문화: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별표 2]

이용료 환불 기준(제14조 관련)

구분		환불유형	환불기준
천재지변 및 복지관 사정으로 이용 취소·중단		① 개시일 이전	-납부금액 전액 환불
		② 개시일 이후	-납부금액 중 이용중단 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불(일할 계산)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중단	이용 기간이 1개월 이내	① 개시일 이전	-납부금액 전액 환불
		② 이용 개시일 이후 - 이용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기간의 1/2 이후	-납부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납부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불
	이용 기간이 1개월 초과	① 개시일 이전	-납부금액 전액 환불
		② 개시일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 불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 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1. 제안이유 ○ 연수구민에게 아동학대의 문제가 단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제임을 인식시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아동 복지시설 등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제4조)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각종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7조) ○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8조 ~ 제15조)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19. 7.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142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

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법제 5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나.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유치원

라.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 피해조사,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예방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홍보)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
 4. 아동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추가·수정·삭제하고 ○ 보육유공자 포상,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 추가·수정 - 제11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 - 제19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신청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 - 제20조 센터장 자격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 ○ 영유아 보육 발전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이 부진한 위원 해촉 가능 조항 신설 - 제1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 및 센터장의 겸임 규정 폐지 - 제19조의2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취소 조항 신설 - 제2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장이 임면으로 수정 - 제21조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신설 - 제26조 보조금 명칭 변경 및 지급근거 추가 - 제28조 보육유공자 포상 조항 신설 - 제29조 영유아 보육·양육 관련 시책 등 우수제안 공모 조항 신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19. 7.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14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회 참석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위탁운영기관이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위탁운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을 “센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하며, “임명한다”를 “임명하고,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센터”로,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센터”라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운영

제2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제공 및 장난감·도서·영상물 대여

제22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센터”라 한다.

제23조는 삭제한다.

제26조 중 “어린이집에 대하여” 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호,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비용

3.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비용

제26조 제4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정에 대한 비용

5. 영유아 체력단련 및 어린이집 화합도모를 위한 행사 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28조는 삭제한다.

제7장(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포상)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영유아 가정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선발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 및 양육과 관련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우수제안 또는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할 수 있고, 우수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 ----- 인천광역시 연수 구청장-- ----- ----- ----- ----- ----- -----.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임기중이라 도 해촉 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10조(위원의 해촉)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위원회 참석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 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u>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생략)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7조에 의거 영유아·장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② <삭제>

③ 2항으로 변경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②-----
----- 센터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③-----
-5년 -----.

④ <삭제>

제19조의2(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

제20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
 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전
 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외의 직
 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
 로 하며, 공개 채용을 통해 구청장
 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취
소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2 제3항에 해당하
는 경우

2. 위탁운영기관이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위탁운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

②----- 제15조제1
항에 따라 -----

 ----- 5년 -----

 ----- 임명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1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 (생 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
인·구직 정보의 제공

4. ~ 9. (생 략)

10.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놀이프
로그램·장난감·도서 제공 및
대여

11. (생 략)

제2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
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
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하거나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
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 센터-----

----- 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기능) 센터-----
-----.

1. 2.(현행과 같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보
육교직원 대체인력 운영

4. ~ 9. (현행과 같음)

10. ----- 놀이프로
그램 제공 및 장난감·도서·영
상물 -----

11.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도·감독) -----
----- 센터-----

--.

제23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
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충당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3.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
인증 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23조(비용) <삭 제>

제26조(비용의 보조 등) -----

----- < 삭

제 >

-----.

1. (현행과 같음)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비용
3.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비용

4.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가정에
대한 비용

5. 영유아 체력단련 및 어린이집
화합도모를 위한 행사 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
영에 필요한 비용

7.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장 보칙

제28조(포상) ① 구청장은 영유아

<u><신 설></u> <u>제28조 (생 략)</u>	<u>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또는 영유아 가정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선발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 <u>제29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 및 양육과 관련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우수제안 또는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할 수 있고, 우수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u> <u>제28조(준용규정) <삭 제></u>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함. 2. 주요내용 ○ 감면 조례의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 2020년말까지 한정 - '18년 법 개정시 조례로 감면율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20년까지 연장 되었으므로 구세 감면조례에 유효기간을 연장(제2조) ※ '21년부터 법으로 감면율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19. 7.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144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 ----- 제38조제4항제1호----- ----- ----- ----- ----- ----- 2020년 12월 31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불가 및 폐소화기 처리 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 청결명령 조치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6조 제목 ‘환불’ 을 ‘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으로 변경 및 조항 신설 - 연수구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이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별표5] 타 지자체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배부 기준 및 제작사양 신설 ○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폐소화기 항목 추가 - 매년 증가하는 폐소화기 발생 관련, 대형폐기물 분류에 폐소화기를 추가하여 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배출할 수 있도록 품목 추가 ○ 제10조(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 제2항 ‘3월’ 을 ‘1개월’ 로 변경 -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청결명령 조치기간 단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19. 7.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145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3월”을 “1개월”로, “자에 대하여는 1월의 범위 내에서”를 “자에게는 1개월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환불)”을 “(종량제봉투의 환불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자가 신청 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범위에서 확인인증 스티커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확인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처리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원)
전기장판	모든규격	6,000
옥돌자석매트(자석요)	모든규격	11,000
장롱	1쪽 (4자) 1.2M 이상	11,000
	1쪽 (3자) 0.9~1.2M	10,000
	1쪽 (3자) 0.9M 미만	8,000
책상	양수(양서랍)	7,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컴퓨터책상	5,000
	상판	3,000
의자	모든 규격	4,000
식탁	6인용 이상	7,000
	6인용 이하	6,000
쇼파	4인용 이상	11,000
	3인용	10,000
	2인용	6,000
	1인용	5,000
	테이블	3,000
매트리스(침대)	2인용 매트리스	9,000
	1인용 매트리스	8,000
	유아용 침대매트리스	3,000
침대틀	2인용(퀸사이즈포함)	4,000
	1인용	3,000
	돌침대(돌포함)	12,000
	유아용침대틀	5,000
침대머리	모든규격	3,000
서랍장	5단이상(3단양수포함)	8,000
	5단미만	6,000

수납장	다용도수납장	4,000
썬크대(썬크대찬장포함)	대(1m이상)	6,000
	소(1m미만)	4,000
신발장	대(1.5m이상)	6,000
	소(1.5m미만)	3,000
문갑(거실장)	모든규격	6,000
장식장(차단스)	대	8,000
	중	6,000
	소	4,000
책장 (책꽂이)	대 (3단 이상)	6,000
	소 (3단 이하)	5,000
협탁	모든 규격	2,000
TV,오디오 받침대	모든 규격	3,000
탁자	10인용 이상	9,000
	10인용 이하	5,000
밥상	대 (길이 1.2M 이상) 4인용 이상	4,000
	소 (길이 1.2M 이하) 4인용 미만	3,000
피아노	대형 (그랜드)	12,000
	일반 (얼라이트)	11,000
오르간	모든 규격	6,000
스텐트 벽시계	일반	5,000
재봉틀	대	5,000
	소	3,000
빨래 건조대, 행거(옷걸이)	모든 규격	3,000
카펫트	대 (길이 2.5M 이상)	12,000
	중 (길이 2.5M 미만)	7,000
	소 (길이 1.5M 미만)	5,000

액자	대 (대각선 1M 초과)	5,000
	중 (대각선 0.5 ~ 1.5M)	3,000
	소 (대각선 0.5M 미만)	2,000
쌀통	일반	3,000
	다용도	4,000
병풍	모든 규격	5,000
문짝	철재	5,000
	목재	4,000
문틀	대	5,000
	소	3,000
장판	5M 이상	5,000
	5M 이하	4,000
돗자리	모든 규격	5,000
거울	전신거울 (대)	5,000
	반신거울 (소)	2,000
다리미판	모든 규격	2,000
자전거	대 일반 (어른용)	5,000
	소 (어린이용)	4,000
항아리 (화분)	대 (70cm 초과)	5,000
	중 (70cm 미만)	4,000
	소 (40cm 미만)	3,000
오락기	일반	10,000
자동 판매기	대 (입식 1M 이상)	10,000
	소 (1M 미만)	6,000
세면기	모든 규격	5,000
변기	모든 규격	5,000
욕조	모든 규격	10,000
방충망	대 (문)	4,000
	소 (창문)	3,000
아이스 박스	대 (길이 1M 이상)	5,000
	중 (길이 1M 미만)	3,000
	소 (길이 50cm 미만)	2,000

여행용 가방	대 (화물용)	5,000
	소 (기내용)	3,000
바둑판	대 (두꺼운판)	2,000
	소 (얇은판)	1,000
유리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유모차(보행기)	모든 규격	3,000
화장대	모든 규격	6,000
소화기	3.3Kg 이하	3,000
	10Kg 이하	5,000
	20Kg 이하	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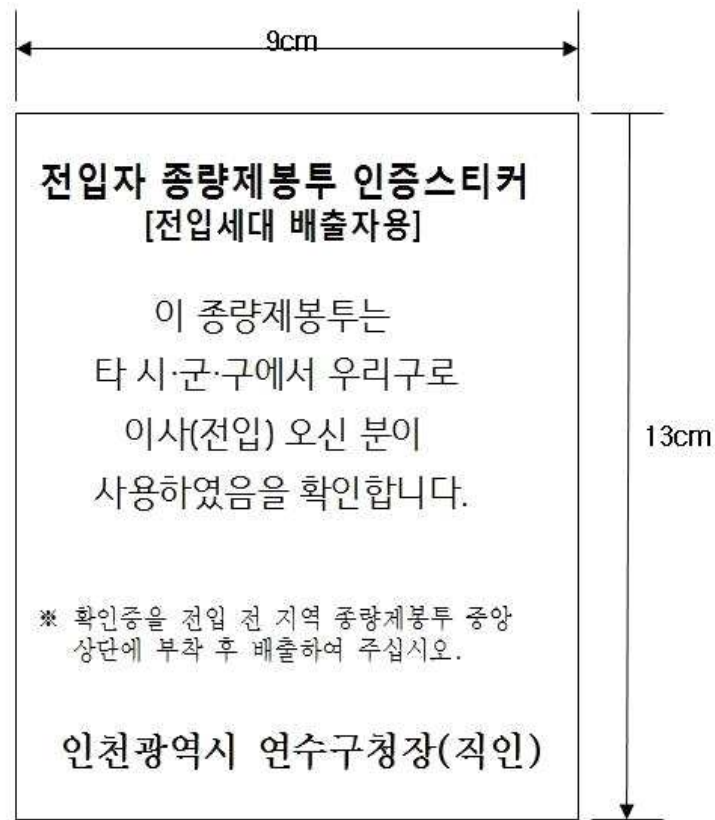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별표 5] 타 지자체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배부 기준 및 제작사양(제16조 관련)

1. 배부 기준

배부종류	배부수량	배부대상
생활폐기물(일반용)	전입 1세대 당 규격별 20매 이내	2015년 8월 5일 이후 전입자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반영

2. 인증스티커 제작사양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u>3월</u> 이내의 조치기간을 주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u>자에 대하여는 1월의 범위 내에서</u>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0조(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개월</u> ----- ----- ----- ----- <u>자에게는 1개월의 범위에서</u>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u>환불</u>) ① · ②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16조(<u>종량제봉투의 환불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자가 신청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범위에서 확인인증 스티커를 지급할 수 있다.</u> ④ <u>구청장은 제3항의 확인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처리해야 한다.</u>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1. 제안이유 ○ 연수구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가 운송적자로 인해 노선이 폐지되어 우리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한정면허를 득하여 연수구를 기점으로 하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의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3조) ○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도록 함(제4조) ○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적자손실액을 산정하여 재정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제5조~제7조) ○ 재정지원 후 지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확인하며,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 (제8조, 제9조) ○ 재정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가·의무, 회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0조 ~ 제17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19. 7.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146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운행 버스를 말한다.
3.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수익성이 없는 노선” (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5. “적자손실액”이란 운송수입이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따른 운송원가보다 적어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득하여 연수구를 기점으로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을 1년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적자손실액의 50% 이내로 한다.

제4조(운송원가 산정 용역 실시) ①구청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광역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송원가 산정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은 제외한다)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5. 차량보험료
6. 그 밖의 비용

③ 제2항제4호의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적자손실액
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적자손실액 산정) 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제4조의 사항을 포함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을 산정하여 적자손실액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연수구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적자손실액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을 자문한다.

1. 재정지원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연수구 도시환경국장,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연수구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2019년 9월(예정)동춘나래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과 위치, 운영 시간,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근거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제5조제3항 관련 [별표1]의 내용 추가 - 동춘나래도서관 명칭 및 위치 ○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2]의 내용 추가 - 동춘나래도서관 운영시간 ○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의 내용 추가 - 동춘나래도서관 시설사용료·수수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19. 7.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147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5조제3항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대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분관	연수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64
분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분관	해돋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7
분관	선학별빛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 30
분관	동춘나래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54번길 30

[별표 2]

도서관 운영 시간(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명 칭	실 명	운영시간
대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18: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학습 열람실	07:00 ~ 22:00
		공 연 장	10:00 ~ 22:00
		세 미 나 실	10:00 ~ 18:00
분관	연수어린이 도서관	자 료 실	10:00 ~ 18:00 (목요일 20:00까지)
		공 연 장	10:00 ~ 22:00
분관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자 료 실	10:00 ~ 18:00 (목요일 20:00까지)
		공 연 장	10:00 ~ 22:00
		독서 토론실	10:00 ~ 18:00
분관	해돋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18:00)
		공 연 장	10:00 ~ 22:00
		디지털북카페	09:00 ~ 22:00 (주말 09:00~18:00)
분관	선학별빛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18:00)
		학습열람실	09:00 ~ 22:00 (주말 09:00~18:00)
분관	동춘나래도서관	자료실	09:00 ~ 18:00
		커뮤니티룸	09:00 ~ 18:00

[별표 3]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 수수료(제19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시설물명		사용시간	1회 사용료	비 고
공 연 장	연수어린이 도서관 공연장	주간	40,000원	◦전기료 포함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 우에는 야간시간 사용료 적용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 우에는 초과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주간사용료의 20%씩 가산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 공연장	야간	50,000원	
	해돋이도서관 공연장			
	연수청학도서관			
	공연장	주간	20,000원	
	야간	25,000원		
연수청학도서관 세미나실		주간	무 료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독서토론실		주간	무 료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		주·야간	무 료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동춘나래도서관 커뮤니티룸		주간	무 료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 비고 1. 도서관 시설물은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
 3. 주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9-96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8. 12. 24. 신설·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의 세무조사 관련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선정 절차, 중복세무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세무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기본형식 및 용어정비 (안 제2조)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안 제11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중복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분세무조사 제도” 마련 (안 제13조)
-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의무 및 조사 사유, 권리구제 절차 등의 설명의무 부여 (안 제34조)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누락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안 제38조)
 - 세무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7일 이내에 통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 연락처 : 전화 : 032-749-7491, 팩스 032-749-7459(참조 : 세무1과장)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 (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 (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

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은 세무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 대상은 법 제147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결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 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납세자를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영세·성실기업으로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은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영세·성실기업으로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구청장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범위, 기간 및 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는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

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의 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세무조사 기간연장의 제한) ①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의 관리

제30조(조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준비조사)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경우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세무조사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세무조사 내용의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세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

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의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명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 나.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시작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 다. 세무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마.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 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사.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 아.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사. 납세자의 이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여야 하며,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차.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조사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치는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하기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라.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 시 세법 등 개정건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0000년 월 일부터 ~ 0000년 월 일까지 ○ 작성자 : (근무부서) (성명) (인) ○ 연락처 : ○ e-mail(담당자) :	제 조 업 () 건 설 업 () 판 매 업 () 운 송 업 () 기 타 ()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증)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297mm×210mm, 가로서식)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0개년) 및 각 서식 작성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0000년도부터 0000년도까지 0년분 작성)

※ 작성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연수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우편번호 : 21967

※ 문의사항 전화 : (032)749-7490~7494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급여대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4)), 유형고정자산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시설물·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원가명세서상의 회계과목에 대한 계정별원장 포함) 및 보조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서면 세무조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 서식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매년 7월1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업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

- 자본금 및 종업원수는 매년 7월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① 정당 세액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15조 제2호에 의한 세액 기재

② 기납부 세액은 당해연도 기납부 세액을 기재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업장)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		자본금 (㉑)	종업원수 (㉒)	정당 세액 (㉓)		기납부 세액 (㉔)		차인세액 (㉕)(㉓-㉔)	
명칭	소재지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는 사업소 소재지, 명칭, 연면적 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과세제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과세제외 내역 :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업장)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㉑)	①과 세 제 외 면 적				과세면적 ㉒(㉑-㉔)	②정당 세액 (㉕)	기납부 세액 (㉖)	납부 일자	차인세액 ㉗(㉕-㉖)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㉔)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종업원수 산정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국외근무자 제외, 수시 고용종업원 포함)

※ 수시고용 종업원수 산정방법 :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수

④ 산출세액

- 0000년까지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0000년이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업장)

0000년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①소계														
② 비과세소득															
	②소계														
③ 종업원수	상시														
	수시														
	계														
과세표준 ③=(①-②)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③×(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 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 ①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 예) 기타소득, 연금소득, 저축해지 추정세액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 :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에 의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②

 : $\text{합계(과세표준액)} \times \text{「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세율}$

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0000년	사업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번지 호	사업장명	
------	-------	-----	------------------	------	--

구 분 별 월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작성요령

○ 매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종원업수, 사업장 연면적은 각각 인천시 관내 전체와 전국 전체의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을 작성
- 사업장별 안분비율은 전국 전체의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에서 인천시 전체의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의 비율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재
 - ① 정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 제1항에 의한 세액 기재
 - ② 기납부 세액은 당해연도 기납부 세액을 기재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		사업장별 안분비율 (인천비율) (%)	법인세 과세표준			정당 세액 ㉠	기납부 세액 ㉡	차인 세액 ㉢(㉠-㉡)
명칭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수) 종업원수 (명)	(전국) 총종업원수 (명)	(연수) 사업장 (㎡)	(전국) 총사업장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 소득	미환류 소득			

압수·영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직인

압수·영치 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예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직인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4항 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8. 12. 24.>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

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7월 0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상의 용어 정의 오류 수정 필요
- 소형·정형승용 정수 통합 책정 및 관리 필요
- 공용차량 정수 구분 오류에 따른 정수 수정 필요 및 각 부서(기관)의 공용차량 신규취득에 따라 승용차량 기준정수 조정 필요

2. 관리규칙 주요 개정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상의 용어 정의 오류 수정
- 현재 공용차량 정수 오류 수정
 - ：본청 소형승용 기준정수 3대 감소 및 중형승용 기준정수 3대 증가
- 향후 대체·신규구입 차량 정수배정(조직개편 및 동 주민센터 분동)
 - ：본청 중형승용 기준정수 4대 증가 및 소형승용 기준정수 2대 증가
- 복지정책과 함박복지관 지원 차량 신규구입

: 본청 소형승용 기준정수 1대 증가

○ 보건행정과 방역차량 신규구입

: 보건소 경형승용 기준정수 1대 증가

○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직영운영·기능확충에 따른 지원차량 인수·신규구입

: 보건소 중형승용 기준정수 5대 증가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07. 23.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기타사항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재무회계과(☎749-7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7363, FAX 749-7349

4. 참고자료

○ 규칙 개정(안) [붙임 1]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량 정수”란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그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차종·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별표 2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및 경형승용차
구 분 청	45대	4대	23대	18대
구 의 회	1대	1대		
보 건 소	12대		5대	7대
도 서 관	1대			1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같음)-.																																																																				
1.(생략)-----.	1.(현행과 같음)-----.																																																																				
2.(생략)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 말한다.-----.	2.(현행과 같음)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그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차종·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3. ~ 12. (생략)-----.	3. ~ 12.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1. 승용차량 기준정수																																																																				
<table><tr><th rowspan="2">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th><th rowspan="2">기준정수</th><th colspan="4">차 형 별</th></tr><tr><th>대형 승용차</th><th>중형 승용차</th><th>소형 승용차</th><th>경형 승용차</th></tr><tr><td>구 분 청</td><td>38대</td><td>4대</td><td>16대</td><td>10대</td><td>8대</td></tr><tr><td>구 의 회</td><td>1대</td><td>1대</td><td></td><td></td><td></td></tr><tr><td>보 건 소</td><td>6대</td><td></td><td></td><td>2대</td><td>4대</td></tr><tr><td>도 서 관</td><td>1대</td><td></td><td></td><td>1대</td><td></td></tr></table>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경형 승용차	구 분 청	38대	4대	16대	10대	8대	구 의 회	1대	1대				보 건 소	6대			2대	4대	도 서 관	1대			1대		<table><tr><th rowspan="2">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th><th rowspan="2">기준정수</th><th colspan="4">차 형 별</th></tr><tr><th>대형 승용차</th><th>중형 승용차</th><th colspan="2">소형 및 경형 승용차</th></tr><tr><td>구 분 청</td><td>45대</td><td>4대</td><td>23대</td><td colspan="2">18대</td></tr><tr><td>구 의 회</td><td>1대</td><td>1대</td><td></td><td colspan="2"></td></tr><tr><td>보 건 소</td><td>12대</td><td></td><td>5대</td><td colspan="2">7대</td></tr><tr><td>도 서 관</td><td>1대</td><td></td><td></td><td colspan="2">1대</td></tr></table>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및 경형 승용차		구 분 청	45대	4대	23대	18대		구 의 회	1대	1대				보 건 소	12대		5대	7대		도 서 관	1대			1대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경형 승용차																																																																
구 분 청	38대	4대	16대	10대	8대																																																																
구 의 회	1대	1대																																																																			
보 건 소	6대			2대	4대																																																																
도 서 관	1대			1대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및 경형 승용차																																																																	
구 분 청	45대	4대	23대	18대																																																																	
구 의 회	1대	1대																																																																			
보 건 소	12대		5대	7대																																																																	
도 서 관	1대			1대																																																																	
2.~ 4. (생략)	2.~ 4. (현행과 같음)																																																																				

연수구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의 도입에 따라 ‘장애정도’ 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
- 2019년 연수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위 및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
- 한자어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 각각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개편되는 장애정도 기준에 맞는 용어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및 부서명 변경 반영
-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정
- 조례 제명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7.2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기획예산실

○ 연 락 처 : 전화 749-7102 FAX 749-7073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불임

(붙임: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문화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내지 제3호” 를 “부터 제3호까지의” 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증장애인공무원” ”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공무원” ”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을 “장애정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증장애인공무원”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공무원” 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본문 중 “1~3급 장애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장애인(1~3급)”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자용” 를 “보행보조용” 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손괴” 를 “파손”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를 “수탁관리자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별표 2]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제15조 제1항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연수구 주관부서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2.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3. 가축 질병	경제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	4.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경제지원과
보건복지부	5. 감염병 재난, 6.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
환경부	7.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8.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9. 황사 10. 식용수 사고	환경보전과 " " 위생과
고용노동부	1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지원과
국토교통부	12. 공동구 재난 13. 도로터널 사고 14. 육상화물운송 사고, 15. 지하철 사고 16.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과 " 교통행정과 " 건축과
해양수산부	1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18. 해양 선박 사고	환경보전과 경제지원과
행정안전부	19. 화재·위험물 사고 20.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21.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22. 풍수해·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 23.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안전관리과 " " " "
문화재청	24.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산림청	25. 산불, 26. 산사태	공원녹지과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구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별표 5]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17조제1항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5. 화상회의 준비·운영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관리과 수습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호우피해정보관련 관련기관에 제공 5. 인명피해 상황관리 6. 재산피해 상황관리 7.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8.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9. TV 방송 모니터링 10.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안전관리과 홍보미디어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3.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인천광역시 대책본부장 특 별지시사항 처리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5.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8.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9.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0.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1.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2.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지원	안전관리과 / 총무과
	행정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총무과
협 업 기 능 반	긴급생활 안정지원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1. 긴급생활안정지원체계 구축 및 가동준비 2. 부처별 긴급생활안정 지원정책 확인 및 시행준비 3.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긴급지원 준비 4. 재해구호물자 응원 등 유관기관 상호협력체계 확인 5.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 지출 준비 6. 피해지원 정책 종합홍보 사전준비	복지정책과 / 안전관리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 원 1.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전지정 2. 과거사례를 참고하여 재난폐기물 발생량 추정 3. 대규모 재난폐기물 대비 장비동원체계 점검	환경보전과 / 자원순환과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4.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식수 위생관리	
	긴 급 통신지원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1. 재난발생 시 통신시설 침수·파손 등 통신두절 대비 2.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기관별 비상연락방 정비 3.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활용자원 파악 4. 전력시설 파괴로 인한 통신시설 전력공급대책 마련 5. 전용회선 등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두절 대비	안전관리과
	시 설 응급복구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1.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투입 2. 가능한 응급복구 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 3. 재난발생 즉시 동원 가능토록 관련기관에 준비지시 4. 피해 극심지역 부족장비 파악, 광역지원체계 운영 5. 재난피해 대비 특별지시 및 계도	건설과 수습주관부서
	에 너 지 기능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1. 에너지 기능 고장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 및 예측 2. 대규모 에너지 시설물 피해대비 응급복구체계 점검 3. 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준비 4. 에너지 단절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시	경제지원과
	재난수습 홍보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TV, 라디오, 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재난에 관한 보도자료 수집 및 배포 3. 언론사 브리핑 준비 및 실시 4.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TV 자막방송 등) 전파 5. SNS 및 외부전광판,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보도내용 대응	홍보미디어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① 평시 1.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 협정체결을 통해 비상시 긴급 투입 가능한 응급복구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 2. 재난특성에 맞는 방재자재 비축 조치 3. 상호협력 기능별로 필수장비 확보 4. 장비동원 준비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사전 협약 ② 재난 발생시 1. 재난 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 유지 2.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물자·장비 등) 동원대책 수립	안전관리과
	교통대책 <육상 교통수단 지원>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1. 유관기관 및 지자체 비상연락체계 가동 2.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긴급수송 지원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의료·방역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1. (의료) 보건소,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망 점검, 응급 의료물자 비축 현황 관리, 전염병 예방교육 및 감시체계 운영 2. 재난발생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현황 파악 3.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 및 확인 4. (방역) 방역물자 비축현황 및 방역요원 비상연락망 정비 5.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자원봉사 관리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1.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상황체제 점검 2. 자원봉사자 인력활용 준비·점검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재난지역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1.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2.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3.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연수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1. 대규모 피해예상지역 소방력 전진배치 및 현장상황통제관 사전파견 2.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3.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물질 오염 등으로 접근 곤란 예상 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계획수립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 지원	공단소방서
유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유관기관

신 · 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u>	<u>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u>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위원은 <u>복지경제국장</u> ,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 (생략)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문화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u> ----- -----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46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소속 국장, 보건소장 및 <u>안전총괄실장</u>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	제4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안전관리과장</u> ----- -----

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	--

3.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u>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⑥·⑦ (생략)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u>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한 차례만</u> ----- -----. ⑥·⑦ (현행과 같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u>내지 제3호</u> 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연수인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②·③ (생략)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 ----- <u>부터 제3호까지의</u> ----- ----- -----. ②·③ (현행과 같음)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 <u>중증장애인공무원</u> "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공무원</u> "
제8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u>장애등급</u> ,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u>중증장애인공무원</u> 근로지원인 배정 2. ~ 4. (생략)	제8조(지원내용) ① ----- ----- ----- ----- <u>장애정도</u> ----- ----- -----. ② ----- ----- ----- ----. 1.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공무원</u> ----- ----- 2. ~ 4. (현행과 같음)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현행	개정안
----	-----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① (생략)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연수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u>1~3급 장애인</u>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 및 예방접종.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하며,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제외한다.	7. -----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 ----- ----- ----- ----- -----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7.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연수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국가유공자, <u>장애인(1~3급)</u>, 65세 이상 홀로 사 는 노인 세대 다.·라. (생략) 3.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 다.·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

8.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 -----. 1. -----

자전거도로 ·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 한 것 및 <u>장애자용</u>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 되 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 을 적용한다. 2. ~ 6. (생 략)	----- ----- ----- <u>보행보조용</u> ----- ----- ----- -----. 2. ~ 6. (현행과 같음)
---	--

9.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 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 운영에관한조례</u>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11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궁도장 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u>손괴</u>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감독) ①구청장은 <u>수탁관</u>	<u>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u>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손해배상) ①----- ----- ----- <u>파손</u>-----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감독) ①----- <u>수탁관</u>

리자에 대하여 궁도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 감사도 실시할 수 있
 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리자에게 -----

 --.

②----- 제1항에 따라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7. 05.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24번길 6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민원지적과(☎749-7602,760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폐지) 고시 조서

NO	계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폐지사유	비고(참고)
1	육면동 420-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니루로124번길 8	20190706	종속으로 인한 건물 합병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낙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는
영업을 제한한다는 규정 신설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사고 방지, 그 밖에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와
낙시어선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 낙시어선업자(이하 “낙시어선업자”라 한다)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 제7호의 낙시어선(이하 “낙시어선”이라
한다), 낙시어선업자, 선원 및 낙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낙시어선업자 준수사항

제3조(영업시간의 제한) ①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한다.

②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어선검사
증서상 야간운항이 가능한 낙시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야간영업을
허용한다.

1. 11월부터 3월까지 : 05:00 ~ 20:00
2. 4월부터 10월까지 : 04:00 ~ 21:00

제4조(운항횟수의 제한) 낚시어선업 행위는 1일 2회까지만 허용한다.

제5조(영업구역의 제한) 낚시어선업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사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 조업규칙」, 「어선안전 조업규정」 등에 의한 제한·통제구역 및 서해특정해역 등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타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선주·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록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제1항에 따른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찰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낚시어선 선장의 안전대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⑥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주류를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낚시어선업자는 공동영업구역인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내의 모든 도서와 갯바위 및 간출암 등에 원칙적으로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7조(낚시제한기준의 준수) 낚시어선의 승객은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낚시 제한·통제구역의 준수) 낚시어선의 승객은 개별법에 따라 제한 및 통제구역 등의 해역에 낚시어선 안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낚시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약물복용·음주·가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의 승선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승객명부의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낚시승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7.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기타 준수사항) 낚시어선의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미끼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상에 분뇨, 폐기물, 유류 등의 각종쓰레기를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9-6호)은 폐지한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1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건설과(☎749-8523) 및 도시계획과(☎749-86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7. 8.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3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3-1호선)
- 명 칭 : 간도장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규모			폭원 (m)	연장(m)	기능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소로	3	1	6	331	국지도로	광2-6 선학동 136-2	- 선학동 127-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기 정 : 2019. 12.
 - 변 경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주소	지번			도로내	도로외		
1	선학동	328-32	도	1,262.6	468.0	10.0	478.0	

용 지 조 서(변경)

구분	고시 일련 번호	동명	지 번	지목	공 부 (㎡)	편입면적(㎡)		잔 여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도로내	도로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변경 없음	1	선학동	136-2	대	63.4	63.4		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6, 2층호(선학동)	천*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 (서린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금암동)(구월동지점)	에스*이 에*지주식회사 주식회사전*은행	
변경 없음	2	선학동	137-6	주	911.4		29.0	882.4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36, 2층호(선학동)	천*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 (서린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금암동)(구월동지점)	에스*이 에*지주식회사 주식회사전*은행	
변경 없음	3	선학동	140-1	전	78.0	78.0		0.0	인천 남구 승의동 4*1-4*	홍*길			
변경 없음	4	선학동	140-16	대	109.7	109.7		0.0	인천시 남구 선학동 1*9	홍*길			
변경 없음	5	선학동	140-27	대	58.7	58.7		0.0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승의동)	홍*길			
변경 없음	6	선학동	139-15	대	82.5	82.5		0.0	인천 남동구 구월동 3*2-* 신세계아파트 *동 1*03호 인천남동구간석동2*3 간석주공아파트 *동3*2호	김*주 이*진			
변경 없음	7	선학동	139-14	대	130.0	13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0, 1*3동 9*3호 (만수동,삼*세라믹아파트)	최*석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주식회사 국*은행	
변경 없음	8	선학동	139-12	대	61.6	61.6		0.0	인천 연수구 선학동 1*9-*	엄*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8(옥련동) (학익지점)	남인천*업협동조합	
변경 없음	9	선학동	139-11	대	115.1	115.1		0.0	인천 연수구 선학동 1*9-*	김*진			
변경 없음	10	선학동	140-25	전	3.6	3.6		0.0	인천시 남구 선학동 1*9	이*진			
변경 없음	11	선학동	140-26	전	80.3	80.3		0.0	인천시 남구 선학동 1*9	서*식			
변경 없음	12	선학동	140-28	전	26.0	26.0		0.0	인천시 남구 선학동 1*9	최*현			
변경 없음	13	선학동	140-24	전	91.9	91.9		0.0	인천시 남구 선학동 1*9	최*현			
변경 없음	14	선학동	140-29	전	99.9	99.9		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 연수주공*차아파트 3*2동 5*8호	원*철			
변경 없음	15	선학동	139-16	대	39.4	39.4		0.0	인천 연수구 선학동 1*9	원*현			

구분	고시 일련 번호	동명	지 번	지목	공 부 (㎡)	편입면적(㎡)		잔 여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도로내	도로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변경 없음	16	선학동	140-10	전	38.0	38.0		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제로 5*, 1*9동 4*2호 (동춘동, 현*아파트)	황*갑			
변경 없음	17	선학동	139-10	대	56.0	56.0		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제로 5*, 1*9동 4*2호 (동춘동, 현*아파트)	황*갑			
변경 없음	18	선학동	81	전	66.0	66.0		0.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4-1*	최*희			
변경 없음	19	선학동	138-4	전	22.5		22.5	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0 금호아파트 *-1*1	차*식		,	
변경 없음	20	선학동	328-32	도	1,262.6	468.0	10.0	784.6		국(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21	선학동	87-7	전	75.0	75.0		0.0	인천시 남구 학익동 2*4	박*태			
변경 없음	22	선학동	137-16	전	17.7		17.7	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5 한양*차아파트 1*9-1*03	최*도			
변경 없음	23	선학동	137-15	전	9.0		9.0	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 현*아파트 8*2-5*3	최*애			
변경 없음	24	선학동	87-6	전	87.1	87.1		0.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5-* 삼*아파트 1*8-1*4	홍*선			
변경 없음	25	선학동	88-7	대	549.0			549.0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4번길 *8(선학동)	고*선			편입 제외
변경 없음	26	선학동	127-7	전	166.6	166.6		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0번길 *8-(선학동)	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8(옥련동) (백운지점)	남인천농*협동조합	
변경 없음	27	선학동	129-1	대	8.3	8.3		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4번길 *7 인천광역시연수구선학동1*9	신*용 유*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구월동지점)	주식회사국*은행	
변경 없음	28	선학동	130-1	전	19.0		19.0	0.0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2*3, 1*1동 4*2호	신*태			
변경 없음	29	선학동	130-2	전	0.2	0.2		0.0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2*3, 1*1동 4*2호	신*태			
변경 없음	30	선학동	139-13	대	0.1	0.1		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4번길 *9 인천광역시연수구선학동1*9-*	최*도 최*선			
신규	31	선학동	140-4	대	237.3		40.2	197.1	인천시 남구 선학동 1*9	홍*길			
합계			기정		4,328.6	2,005.4	107.2	2,216.0					
			변경		4,565.9	2,005.4	147.4	2,413.1					

지장물조서(변경)

구분	고시 일련 번호	동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총수량	편입수량	잔여수량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기정	1	선학동	140-16	웬스	철골	m	57	3	54	인천시 남구 석정로 47-*	홍*길	
변경	1	선학동	140-16	웬스	철골	m	57	3	54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380번길 63-*	윤*운	
변경없음	2	선학동	139-14	조경수	사철나무	m ²	2	2	-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70-30 10*동 903호	최*석	
변경없음	3	선학동	139-12	입간판	철골	ea	1	1	-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139-*	엄*섭	
변경없음		선학동	139-12	조경수	조경수	주	1	1	-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139-*	엄*섭	
변경없음	4	선학동	140-26	조경수	측백나무	주	7	7	-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13*	서*식	
변경없음		선학동	140-26	조경수	사철나무	m ²	3	3	-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13*	서*식	
변경없음		선학동	140-26	조경수	조경수	주	5	5	-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13*	서*식	
변경없음	5	선학동	140-24	담장	벽돌	m	28	12	16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13*	최*현	
변경없음		선학동	140-24	조경수	사철나무	m ²	3	3	-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13*	최*현	
변경없음		선학동	140-24	조경수	조경수	주	2	2	-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13*	최*현	
변경없음	6	선학동	88-7	웬스	철공	m	11	11	-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543번길 6*	고*선	
변경없음		선학동	88-7	과실수	포도나무	m ²	17	17	-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543번길 6*	고*선	
신규	7	선학동	140-4	영업권	고물상	식	1.0	1.0	-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380번길 63-*	윤*운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건설과(☎749-8523) 및 도시계획과(☎749-86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7. 8.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3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3-2호선)
- 명 칭 : 간도장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규모			폭원 (m)	연장(m)	기능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소로	3	2	6	180	국지도로	광2-6 선학동 131-4	소3-1 선학동 87-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용 지 조 서 (변경)

구분	고시 일련 번호	동 명	지 번	지 목	공 부 (㎡)	편입면적(㎡)		잔 여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도로내	도로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변경 없음	1	선학동	131-4	전	224.0	224.0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7	진*근			
기정	2	선학동	120-27	전	7,172.2	-	168.0	7,004.2		인천광역시			
변경	2	선학동	120-27	전	7,172.2	-	168.2	7,004.0		인천광역시			
변경 없음	3	선학동	131-3	전	98.0	98.0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3	김*천			
기정	4	선학동	137-4	전	2,607.8	45.0	69.0	2,493.8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로 문학동 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5	정*연 이*자 정*천			
변경	4	선학동	137-4	전	2,607.8	49.0	-	2,558.8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로 문학동 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5	정*연 이*자 정*천			
기정	5	선학동	328-48	도	456.8	387.0	37.0	32.8		국토교통부			
변경	5	선학동	328-48	도	456.8	399.4	-	57.4		국토교통부			
기정	6	선학동	137-1	전	430.0	60.0	41.0	32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9-*	오*남			
변경	6	선학동	137-1	전	430.0	60.1		369.9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9-*	오*남			
기정	7	선학동	137-9	전	363.0	57.0	55.0	25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9-*	최*한			
변경	7	선학동	137-9	전	363.0	56.8		30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9-*	최*한			

구분	고시 일련 번호	동 명	지 번	지 목	공 부 (㎡)	편입면적(㎡)		잔 여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도로내	도로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기정	8	선학동	137-10	전	363.0	36.0	48.0	27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9	최*현			
변경	8	선학동	137-10	전	363.0	35.6		327.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9	최*현			
기정	9	선학동	137-11	전	354.0	21.0	29.0	304.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	최*애			
변경	9	선학동	137-11	전	354.0	21.4		332.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	최*애			
기정	10	선학동	130	전	512.8	168.0	39.0	305.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3	신*태			
변경	10	선학동	130	전	512.8	168.4	38.8	305.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3	신*태			
합 계			기정		12,581.6	1,096.0	486.0	10,999.6					
			변경		12,581.6	1,112.7	207.0	11,261.9					

지장물조서(변경없음)

고시 일련 번호	동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연수구 선학동	120-4	철크스	그물	m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	김*희	
2	연수구 선학동	137-10	철크스	그물	m	92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9	최*현	
			물탱크	PE	EA	1			
			창고	샌드위치판넬	m ²	6			
3	연수구 선학동	130	철크스	노끈	m	3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3	신*태	
			교목	감나무, R15	주	11			